

비상소집 결과보고서

(지방자치단체명 :)

구 분	총 원	응 소 대 상 인 원	응 소 인 원				미응 소 인원	응소 율 (%)	비 고
			계	1시간 내응소	2시간 내응소	2시간이 후 응소			
총 계	계								
	필수 요원								
	일반 직원								
본 부	계								
	필수 요원								
	일반 직원								
소 속 기 관	계								
	필수 요원								
	일반 직원								

작성자 : (소속) (직급) (성명) (서명)

확인자 : (소속) (직급) (성명) (서명)

<보고요령>

1.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·출장·병가·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.

2. 응소현황 보고

가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교육감의 본청 소속 공무원과 시·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현황은 위 표의 구분에 따라 시간대별로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화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.

나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속 기관과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·군·자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현황은 위 표의 구분에 따른 시간대별 응소결과를 모두 총괄하여 집계한 후 시·도지사, 시·도 교육감과 시·도의회 의장에게 즉시 전화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한다.

다. 시·도지사, 시·도 교육감과 시·도의회 의장은 나목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와 본청이나 시·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응소결과 집계를 총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.